#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허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122 발의연월일: 2022. 6. 23.

발 의 자 : 허 영·강선우·김교흥

김윤덕 • 맹성규 • 소병훈

송기헌 · 유정주 · 이형석

전재수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세 번째로 특별자치단체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음(2023. 6. 11. 시행).

그런데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과 「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」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단체로서 법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이 법에는 해당 규정이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두 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이 법에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달성하고,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며, 국토균형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

등).

#### 법률 제 호

#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887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전단 중 "정부와"를 "국무총리와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정부는"을 "국무총리는"으로 한다.

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0조의2(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) ① 강원자치도가 실 질적인 지방분권을 달성하고,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며, 국토균형발 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 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(이하 "지원위원회"라 한 다)를 둔다.
  - 1. 강원자치도의 조직·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  - 2. 강원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3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
  - 3. 제4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
  - 4.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

-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,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,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다.
-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.
-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.
-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,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의3(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) 지원위원회는 제10조의2제 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,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18875호 강원특별자치도 법률 제1887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(강원자치도의 책무) ①・② 제4조(강원자치도의 책무) ①・②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③ 강원자치도는 강원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정 무총<u>리와</u>-----부와 협약(자치경찰과 교육자 | 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을 체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정부 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과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강원 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 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<신 설> 제10조의2(강원특별자치도 지원 위원회의 설치 등) ① 강원자 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달성하고, 지역 경쟁력을 제고 하며,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

- 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위원회(이하 "지원위원회"라 한 다)를 둔다.
- 1. 강원자치도의 조직・운영에

  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

   행에 관한 사항
- 2. 강원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
   자주권 제고와 제3조제3항에
   따른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
   안 마련에 관한 사항
- 3. 제4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

   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

  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 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 하는 사항
-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 총리가 되고, 위원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, 관계 지방자치 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 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

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-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 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
-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 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.
-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 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①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, 실무지원단의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의3(지원위원회 심의결과 의 조치 등) 지원위원회는 제1 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, 통 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

<신 설>

한다.